

부속기관설치규정

(제정 1993. 5.3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부속기관 (이하 “부속기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① 부속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의 명칭, 목적사업, 규정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실에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처장은 설치 여부를 심사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조(규정) ① 부속기관은 반드시 부속기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, 그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.

② 부속기관의 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조직) ① 부속기관에 부속기관장을 둔다.

②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.

제5조(자격 및 임명) 부속기관의 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1.1.>

제6조(임기) 부속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직무) ① 부속기관의 장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부속기관의 분장업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위원회) ① 부속기관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으로 하며, 부속기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회의) 회의는 부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회의록) 각 부속기관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3인 이상의 서명·날인을 받아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재정) ① 부속기관의 재정은 교비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.

② 부속기관의 회계년도는 대학 회계년도와 같다.

제12조(사업시행) 부속기관의 중요 사업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

제13조(보고) 부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부속기관의 사업운영 보고
2. 위원회 회의 결과보고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4조(부속기관의 폐지) 부속기관의 폐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199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설치·임명된 부속기관과 부속기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